

진도군인사위원회 공고 제 2020 - 15호

2020년 제2회 진도군 지방공무원 경력경쟁 임용시험 공고

2020년 제2회 진도군 지방공무원 경력경쟁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11일

진도군인사위원회 위원장



I 선발예정인원

시험명	시험방법	직급	직렬	직류	선발예정인원	비고
2020년도 제2회 진도군 지방공무원 경력경쟁 임용시험	경력경쟁 임용시험	9급	시 설	일반토목	16명	
				건축	7명	

II 시험방법 및 일정

1. 시험방법

가. 서류전형 : 응시자격, 가산점 등 기준 적합여부 서면심사

나. 제1·2차 시험(병합실시) : 필기시험(과목별 20문제, 4지 택1형)

구분	시험과목	시험시간	비고
시설(일반토목)	물리, 응용역학개론, 측량	10:00~11:00(60분)	
시설(건축)	물리, 건축계획, 건축구조	10:00~11:00(60분)	

※ 합격자 결정 : 과목당 4할, 전 과목 총점의 6할 이상 득점자 중에서 고득점자순으로 성적순에 의거 선발 예정인원 범위내 합격자 결정

다. 제3차 시험 : 면접시험(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해 실시)

2. 시험일정

시 험 공고일	응시원서 접수기간	시 험 구 분	시험장소 공 고 일	시험일	합격자 발표일
'20.11.11. (수)	'20.11.25.(수) ~ 11.27.(금) / 3일간	필 기	'20.11.30.(월)	'20.12.26.(토)	'20.12.29.(화)
		면 접	'20.12.29.(화)	'21.01.06.(수)	'21.01.08.(금)

- ※ 시험장소 공고 및 합격자 발표 등 시험관련 사항은 진도군 홈페이지 (<http://www.jindo.go.kr>) 고시공고 란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응시자격

가. 응시연령

1) 9 급 : 18세이상(2002. 12. 31. 이전출생자)

나. 거주지 제한 : 거주지 제한 없음

다. 응시 자격요건(자격 · 면허증 등) *기준일 : 해당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
일

직렬	직류	대상 자격증	
시설	일반 토목	기술사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기사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산업기사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기능사(2)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시설	건축	기술사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
		기능장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사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산업기사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방수,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기능사(2)	전산응용건축제도, 타일, 미장, 조적, 온수온돌,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거푸집, 금속재창호, 건축도장, 철근, 방수, 실내건축, 플라스틱 창호

※ 기능사(2) : 직류별로 정한 해당 자격증을 소지한 후 () 안의 기간 이상 관련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한국건설기술인협회 경력증명서에 기재된 경력에 한함)이 있어야 함

■ 해당 자격증을 보유한 자 및 해당 시험 최종일까지 취득예정자에 한해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 자격증은 해당 면접시험 최종일 현재 유효해야 하고, 자격 등 시험에 관한 사항을 허위로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 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될 수 있고, 합격결정 취소 및 향후 5년간 각종 공무원임용시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격증은 해당 최종시험일(면접시험 최종일) 현재 유효한 것이어야 하며, 최종시험일(면접시험 최종일)까지 취득이 확실한 경우 응시 가능합니다.

마. 응시결격사유 등(기준일 : 해당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 추가합격자 선발의 경우에도 해당 시험의 최초 면접시험 최종일로 합니다.)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에 해당되는 사람 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에 해당되거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시험 응시자격이 정지당한 사람은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지방공무원법 제31조 : 결격사유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지방공무원법 제66조 : 정년 >

1.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2. 제1항에 따른 정년을 적용할 때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 : 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

-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 5의2.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6.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 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

-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4. 응시원서 접수(우편접수 및 방문접수)

가. 응시원서 교부 :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붙임2)을 출력하여 작성

나. 접수기간 : '20. 11. 25.(수) ~ '20. 11. 27.(금) / 3일간

다. 접수장소 : 진도군청 행정과(3층)

라. 접수방법 : 접수기간 중 근무시간 내(09:00~18:00)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제출

- 1) 우편접수는 접수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

※ 우(58915, 전남 진도군 진도읍 철마길 25(진도군청) 행정과 행정팀

※ 우편접수자는 우체국 통상환증서(응시수수료)와 응시표 회송용 봉투를 함께 우편송부(회송용 봉투에는 등기우표 부착, 수신인 주소와 성명 정확히 기재)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책임입니다.

마. 제출서류

1) 응시원서(붙임1 서식) 1부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탈모정면상반신 반명함판(3.5*4.5) 2매 부착
- 응시수수료 : 9급(5,000원)
 - 방문접수 : 진도군 수입증지 부착(군청 1층 농협출장소 구입)
 - 우편접수 : 우체국 통상환증서

2) 응시분야 관련 자격증 사본 1부

3) 주민등록초본 1부(공고일 이후 발급된 것으로 병역사항과 주소이력 전체)

4) 이력서 1부(붙임2)



